



서안 링윈 공업 유한공사 VS 서안 친방 전신 재료 공장 상 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03)民三监字第28-2 号
판결 일자	2006년 12월 4일	판결 결과	재심신청 기각(권리 자 승)
원심원고(재심피신 청인)	서안 친방 전신 재료 공장		
원심피고(재심신청 인)	서안 링윈 공업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집행 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74조		
영업비밀	분절기 F660 기술		
키워드 (Keyword)	재심(再審), 재심신청 기각통지서(驳回再審申請通知書), 재심 조건(再審 條件)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서안 친방 전신 재료 공장(이하 '친방공사')가 서안 링윈 공업 유한공사(이하 '링
윈공사')에게 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을 청구하여 원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링윈공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재심 피신청인)	⇒	⇐	원심 피고(재심 신청인)
(나타나지 않음)			원심은 감정 대상 기술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획득하였다. 감정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

04 판결 요지

원심 피고가 원심 소송 중 감정 대상 오류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재심 신청에서의 주장에 상응하는 증거도 없다.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인의 증언인데, 이 또한 원심에서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심에서 증거조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합당하다. 그러므로, 재심 신청이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179조¹⁾ 재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하고 특별히 통지한다.

05 Key Point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재심사유를 1)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2) 원 판결이나 결정이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결여 하였을 때, 3) 원 판결이나 결정이 주요증거가 위조되었을 때, 등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재심신청이라고 보는 경우, 정식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본 사건과 같이 '재심신청 기각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1) 현행 민사소송법 제200조